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85 절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18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